

건학정신	가 정 통 신 문	교훈
주인정신 개혁정신 자아개발		자율성 지성 창조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인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 2명(1학년 학부모 대상)**을 3월중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우편 등을 통한 방식 포함)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자문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 3. 7.

※ 학교운영위원 선출 관련사항 더보기 :

[완주고등학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학교운영위원 선거](#)

완 주 고 등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이며
- 이번에 선출되는 위원(학부모위원 2명)의 임기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의 자격, 자격 및 겸직제한

-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 위원 : (전주·완주)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주·완주)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261 - 2619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위원 선거일정]

- 선 거 홍 보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출관리위원회구성(2019.3.6.)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3명을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후보자 등록, 투표개표 등 선출업무 추진

선거공고(2019.3.13.까지)

◦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 후보자 자격 등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2019.3.13.까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장을 발송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

후보자 등록(2019.3.14. ~ 3.15. 17시까지)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된 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선거공보(2019.3.19. ~ 3.20.) 및 투표용지 발송(3.19.)

◦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해당학년의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공보물 발송 시 가정통신문을 병행하여 투표하므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

가정통신문 투표용지 회수(2019.3.20. 17:00까지)

◦3.20. 17:00까지 도달한 것만 유효하며 회수된 가정통신문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투표실시(2019.3.21. 10시)

◦후보자의 소견발표 후,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통해 학부모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직접투표

개표(2019. 3. 21.)

◦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개봉

당선자 공고(2019.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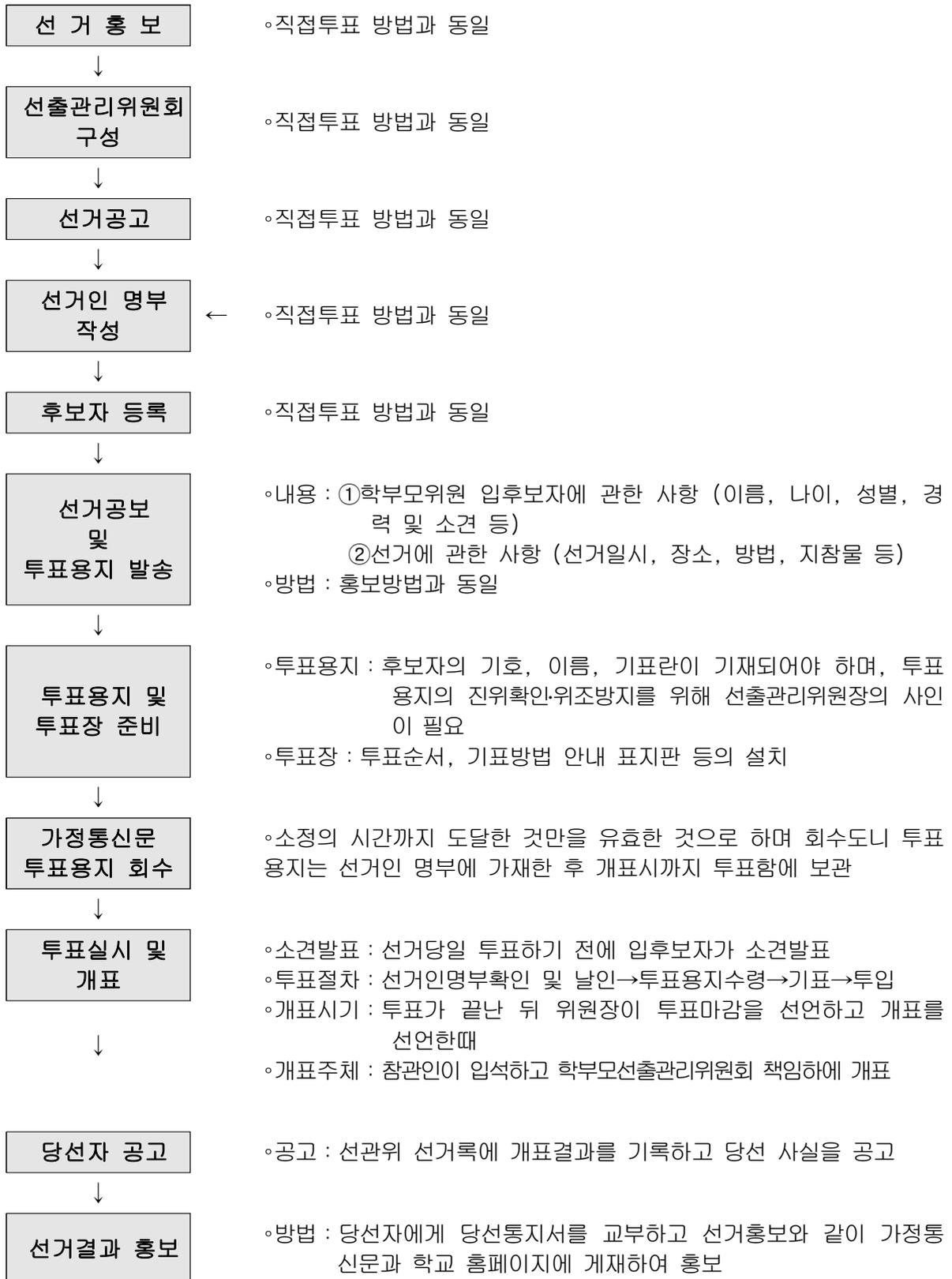
◦다수 득표자 순으로 2명씩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

선거결과 홍보(2019.3.21.)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본교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학부모위원 선거절차]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학교법인 부림학원 정관(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발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94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5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보직교사를 포함한 3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9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7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

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8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99조(위원의 당연퇴직)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단, 학생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된 때

② (삭제)

③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에 알린다.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100조(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101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0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